

1. 개정이유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규칙」 내에 변리사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불성실 교육 이수’와 ‘성취도 평가’를 명시하고, 실무수습 불인정에 대한 세부 규정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는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변리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를 통해 처리 정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불성실 교육 이수’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호가 규정하는 실무수습 불인정

-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 ‘불성실 교육 이수’를 직접 명시
- 나.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성취도 평가’ 명시 (안 제4조 제1항 제2호)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8항을 반영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무수습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구체화
- 다. 실무수습 불인정 세부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2항)
- 집합교육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수습 불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라.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8. ~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을 “부실하거나, 현저히 불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실무수습 이수 실적”을 “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성취도 평가 결과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 불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제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주소							
현장연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일)						
현장연수 주요내용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자격 취득 근거		[] 「변리사법」 제3조제1호(년도 제 회) [] 「변리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현장연수기관		현장연수기관 주소						
현장연수 지도관	(서명 또는 인)							

「변리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현장연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연수기관장 귀하

위 신청사항을 확인합니다.

현장연수기관장

직인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한글 [] 영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방법

- [] 시험 합격자(년도 제 회), (시험 일부면제자인 경우 표시 [])
- [] 변호사
- [] 공무원 경력자

재발급 사유(자세히 적으십시오)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변리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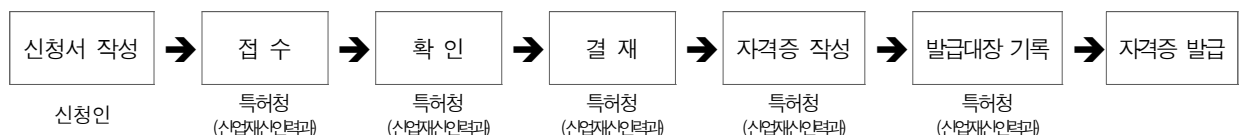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 허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나.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일	자격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 유형	발급 사유	비고
		한글	영문				

297mm× 210mm[백상지 80g/㎡]

변리사 등록신청서
([] 신규 [] 재등록 [] 재발급)
([] 한글 [] 영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전공	()년 ()월 ()대학/대학원 ()학과 졸업	주요 경력	()년 ()월 ~ ()년 ()월 ()근무	

사무소 (예정)	명칭	(한글)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주소	(한글)	변리사 인감 (인감 날인)	
		(영문)		

자격 취득 근거	[] 시험 합격자()년도 제 회)	자격증 번호	제 호
	[] 변호사		
	[] 공무원 경력자		

재발급 사유 (자세히 적으십시오)	
-----------------------	--

「변리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신청,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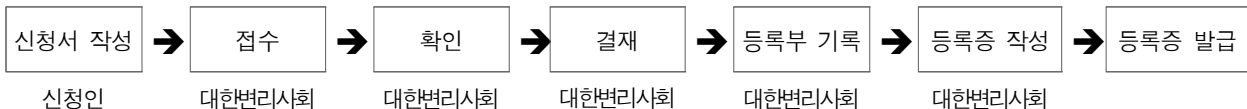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하

첨부서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수수료 20만원 (재발급 시 없음)
------	---	------------------------

처리 절차



변리사 등록부

(앞쪽)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 . .	사진 3.5 X 4.5cm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 근거		☐ 「변리사법」 제3조제1호 (년도 제 회) ☐ 「변리사법」 제3조제2호 ☐ 공무원 경력자	자격증 번호	제 호 (. .)	
학력	연월일		학교명		전공학과
	. . .				
	. . .				
	. . .				
	. . .				
주요 경력	기간		근무처 또는 소속 단체		직위
	~				
	~				
	~				
	~				
주거지	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210mm× 297mm[인쇄용지(특급) 100g/㎡]

(뒤쪽)

사무소	연월일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 .				
개업 휴업 폐업 등록취소	연월일	구분	사유		
	. . .				
	. . .				
	. . .				
	. . .				
징계사항	연월일	징계 종류	징계 사유		
	. . .				
	. . .				
	. . .				
	. . .				
사용할 인감					
연월일	. . .	. . .	. . .	. . .	. . .
인감					
갱신 사유					
그 밖의 사항					

출 석 통 지 서

「변리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명	한글		등록번호	제 호
				생년월일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년 월 일

변리사자격 ·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만일 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출석기일 2일 전에 의견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 조제6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① --- ----- ----- ----- -----.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 우 <u>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 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u>	1. ----- -- <u>부실하거나, 현저히 불성 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u>
2. <u>실무수습 이수 실적이</u> 특허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미달하는 경우	2. <u>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성취 도 평가 결과가 -----</u> -----
3. (생 략)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 불인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